

##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17년 9월 26일 조례 제161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오산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화재안전취약가구”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.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나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

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라. 24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

마. 그 밖에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

2. “주택용 소방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소화기

나. 단독 경보형 감지기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)**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)**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.

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.

**제6조(지원 신청)**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 다만,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
##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